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4. .

제 안 자 :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‘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 등’에서 “등”을 삭제하여 ‘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’로 용어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함(안 제126조의2).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26조의2 제목 중 “내용·방식·형태 등”을 “내용·방식·형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, 같은 조 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내용·방식·형태 등을”을 각각 “내용·방식·형태를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26조의2(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)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.	제126조의2(구체적 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 등 제시 의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·방식·형태 등을----- -----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 등을----- ----- -----.	제126조의2(구체적 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 제시 의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내용·방식·형태를----- ----- -----내용·방식·형태를----- ----- -----.
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	② ----- ----- -----구체적 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 등을----- ----- ----- -----	② ----- ----- -----내용·방식·형태를----- ----- ----- -----

판단하기 위하여
그 당사자에게 자
료의 제출을 명할
수 있다. 다만, 그
자료의 소지자가
그 자료의 제출을
거절할 정당한 이
유가 있으면 그러
하지 아니하다.

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“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”를 “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”로 한다.

.

[illegible][illegible][illegible]

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<u>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</u>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<u>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</u>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	----- -----. ④ ----- -----<u>자</u> -----<u>기의 구체적 행위의</u> <u>내용 · 방식 · 형태</u> <u>등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침</u> <u>해행위의</u> <u>구체적</u> <u>내용 · 방식 · 형태</u> <u>등을</u>----- ----- -----.	----- -----. ④ ----- ----- ----- -----<u>내용 · 방식 · 형태</u> <u>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침</u> <u>해행위의</u> <u>구체적</u> <u>내용 · 방식 · 형태</u> <u>를</u>----- ----- -----.
---	---	---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75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19.

발 의 자 : 김정호 · 이수진 · 최기상
박희승 · 전진숙 · 이연희
윤후덕 · 정성호 · 임미애
허종식 · 이훈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‘행위태양’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, 법제처는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서 ‘태양’을 ‘모습이나 형태’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.

이에 ‘행위태양’을 ‘행위의 내용 · 방식 · 형태 등’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6조의2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‘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 등’에서 “등”을 삭제하여 ‘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’로 용어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함(안 제126조의2).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6조의2의 제목 중 “행위태양”을 “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”을 “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·방식·형태를”로, “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”을 “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구체적 행위태양을”을 “구체적 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행위태양을”을 “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”을 “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를”로, “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”을 “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·방식·형태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6조의2(구체적 <u>행위태양</u> 제 시 의무) ①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<u>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</u> 부인하는 당사자는 <u>자기의 구 체적 행위태양을</u> 제시하여야 한다.	제126조의2(구체적 <u>행위의 내용</u> · 방식 · 형태 제시 의무) ① - ----- ----- ----- <u>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 · 방식</u> <u>· 형태를</u> ----- ---- <u>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 용 · 방식 · 형태를</u> ----- -----.
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<u>구체적 행위 태양을</u>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 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 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----- ----- <u>구체 적 행위의 내용 · 방식 · 형태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 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	③ ----- -----

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 132조제3항 중 “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”를 “구체적 <u>행위태양</u>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”로 한다.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<u>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</u>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<u>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</u>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	-----. ----- ----- -----<u>행위의</u> <u>내용 · 방식 · 형태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④ ----- <u>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 ·</u> <u>방식 · 형태</u>----- ----- ----- -----<u>침해행위의 구체적</u> <u>내용 · 방식 · 형태</u>----- -----.
--	---

